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 월 29 일

여 수 시 장 정기명 인

여수시장인

여수시 조례 제2014호

붙임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2014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제1조(「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2조(「여수시 다문화가족 및 북한 이탈주민 희망바우처 지원 조례」의 개정)

여수시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희망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만 5세이상 만18세"를 "5세 이상 18세"로 한다.

제3조(「여수시립예술단 설치조례」의 개정)

여수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만 18세이상 만55세 "를 "18세 이상 55세"로, " 만 60세"를 " 60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만 7세이상 만15세"를 "7세 이상 15세"로, "만 20세"를 "20세"로 한다.

제4조(「여수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만7세"를 을 "7세"로 한다.

제5조(「여수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제6조(「여수시 후계 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만 18세 이상 만 40세”를 “18세 이상 40세”로 한다.

제7조(「여수시 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본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8조(「여수시 주차장 조례」의 개정)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 본문 중 “ 만 18세”을 “18세”로 한다.

제9조(「여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중 “만15세”를 “15세”로 한다.

제10조(「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1조(「여수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의 개정)

여수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2조(「여수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만33세 ”를 “33세”로 한다

제13조(「여수시 다함께 돌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다함께 돌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세에서 만12세”를 “ 6세에서 12세”로 한다.

제14조(「여수시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 만 12세”를 “12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만 12세”를 “12세”로 한다.

제15조(「여수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여수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중 “만 65세”를 “ 65세”으로 한다.

제16조(「여수시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여수시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1.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모집을 공고한 날 또는 추천받은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7조(위원의 자격) ① ------ ---------- ---------- ---------- 18세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2. 여수시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희망바우처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 대상)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희망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하 "발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청 당시 다음 각 호	제3조(지원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대한민국 및 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 출생한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중 만 5세이상 만18세이하인 사람	3.---------- ---------- ---------- ---------- --- 5세 이상 18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3. **여수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위촉 및 정년) ① 단원의 위촉연령은 만 18세이상 만 55세이하이며, 정년 해촉연령은 만 60세로 한다.	제11조(위촉 및 정년) ① ----- --------- 18세 이상 55세 - ---------- 60세 ----------.
② 소년소녀합창단(지휘자·단무장·반주자·안무자 제외)의 위촉연령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만 7세이상 만 15세 이하이며, 정년 해촉연령은 만 20세로 한다.	② ---------- ---------- ---------- 7세 이상 15세 ---------- ---------- 20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4. 여수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미취학”은 만 7세 이하, “학생”이라 함은 8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5. (생 략)	제2조(정의) ----------. 1. ~ 3. (현행과 같음) 4. --- 7세---------- ---------- ---------- ---------- -. 5. (현행과 같음)

5. 여수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 대상)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대상자”라 한다)은 예방 접종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시민으로 한정한다. ③ (생 략)	제2조(지원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65세 ----------. ③ (현행과 같음)

6. 여수시 후계 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청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여수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 5. (생 략)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 18세 이상 40세 미만 ----------. 3. ~ 5. (현행과 같음)

7.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종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 비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하여 감면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회에 따른 감면은 다른 호와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

중복하여 감면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한다. (신설 2013. 8. 14., 개정 2017. 8. 23., 2019. 10. 14., 2022. 3. 10.)	3.---------- 18세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8. 여수시 주차장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차요금 등) ① ~ ⑦ (생 략) ⑧「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있는 세대나 세 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 자녀의 나이가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하인 세대의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차량 중 1대를 선정하여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 현재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에 한정하고, 신청일로부터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무료이용기간 종료 시 재신청하여야 한다. ⑨ (생 략)	제6조(주차요금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 18세 ---------- ---------- ---------- ----------. --- ---------- ---------- ---------- ---------- ----------. ⑨ (현행과 같음)

9. 여수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공영자전거의 운영·관리)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영자전거를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 1. 이용자는 만15세 이상의 자전거 운전 가능자로 한다.	제14조(공영자전거의 운영·관리) ---------- ---------- ----------. 1. ------ 15세 ----------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10.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지급대상) ① 제10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 기준일 현재 여수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만 지급하고 제14조에 따른 중지 사유 발생시 유족 또는 가족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1. ~ 10. (생 략) ②·③ (생 략)	제11조(지급대상) ① -------- ---------- ---------- ---------- ---------- 65세 ---------- ---------. ---------- ---------- ---------- --------. 1. ~ 10.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11. 여수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여수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3조(지원대상) ---------- ---------- ---------- ---------- ---------- ---------- ----------.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 ~ 4. (생 략)	 1. 65세 ---------- 2. ~ 4. (현행과 같음)

12. 여수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농어촌거주 미혼남성"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남자 농·어업인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혼인신고 사실이 없으며, 신청일 기준으로 만 33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생 략)	제2조(정의) ---------- ---------- -. 1.·2. (현행과 같음) 3. ---------- ---------- ---------- ---------- ---------- ---------- ---------- ---------- 33세 ------- ---------- --. 4. (현행과 같음)

13. 여수시 다함께 돌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세에서 만 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2. ~ 4. (생 략)	제2조(정의) ----------. 1. ---------- 있는 6세에서 12세 ----------. 2. ~ 4. (현행과 같음)

14. 여수시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양육 관련 정보교류와 부모교육 등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생 략)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만 12세 이하	제2조(정의) ----------. 1. -------12세----------. 2. (현행과 같음)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기능) ① ---------12세----

아동의 양육 관련 정보교류와 부모교육 등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한다. ②·③ (생 략)	---------- ---------- ---------- ----------. ②·③ (현행과 같음)

15. 여수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 제 2.·3. (생 략) 4. "독거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가. ~ 다. (생 략)	제2조(정의) ---------- ---------- -. 2.·3. (현행과 같음) 4. ---------- ---------- 65세 ----------. 가. ~ 다. (현행과 같음)

16. 여수시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 제	제2조(정의) ---------- ----------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독거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4. ---------- 65세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